

보 고 번 호	회 의 차 수	회 의 일 자	보 고 자
1 2 5	1 8	1995. 8. 17	총 제 김 명 호

의 안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

보고사항 정부의 중소기업자 지원정책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수혜에
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취약한 물적담보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을 개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함

보고관계
법규조항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2조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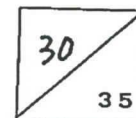
금융기관은 「한국은행법」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불건전한
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.~8. (생 략)

9.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대출, 투자, 지급보증 및 인수업무의 취급
기준과 용도별 한도의 준수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4조(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)

한국은행총재는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여신취급기준을
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

(붙임)
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내용

현행	개정	비고
제1조~제4조 (생략)	제1조~제4조 (현행과 같음)	
제5조 (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) ① 「규정」 제3조의2에서 한국은행총재가 담보취득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.	제5조 (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) ① 「규정」 제3조의2에서 한국은행총재가 담보취득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.	
1.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취급과 관련한 「규정」 제3조의2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으로서 담해기업이 1995. 5. 15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「규정」 제3조의2 제6호에서 정한 제3자명의 부동산(단, 「규정」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의 담보취득	1.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취급과 관련한 <u>부동산의 담보취득</u>	○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시 부동산담보 취득제한 전면 폐지
2. 현저법인에 대한 역외금융 취급이나 현저금융과 관련된 지급보증 취급시 모기업명의 국내부동산(단, 「규정」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의 담보취득	2. ~ 5. (현행과 같음)	
3. 산업합리화조정기업체, 관리기업체, 분류기업체 및 기업정상화금융수혜기업체 등 부실기업체와 신용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체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부동산의 담보취득		
4. 농어민에 대한 농수축산자금 및 소매가계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「규정」 제3조의2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유희토지 등 및 제3자명의부동산(단 「규정」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)의 담보취득		
5. 「도·소매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지에 대한 시장신축 또는 증·개축자금 취급과 관련한 당해시장(건물 및 담해대지)의 담보취득		

현행	개정	비고
② 금융기관은 담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후 담보취득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당해 부동산담보물 해지하여야 한다. 제6조~제8조 (생략) (신설)	② (현행과 같음) 제6조~제8조 (현행과 같음) 부칙 <u>이 세칙은 1995. 8. 21부터 시행한다.</u>	◦ 시행일자 명기